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문화재청장

1.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

분류	대상종목	신청요건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 옥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기능○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 옷나무에서 채취한 생옷을 정제하는 기능	<p>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2.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3.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 ※ 일반전승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 제출서류(A4 사이즈 책자 1권 + usb 1개)

- ①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 ② [붙임 2] 자료활용 동의서
- ③ 동영상 파일

※ 관련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3호)

- ④ [붙임 3] 보유자 인정관련 확인서

○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 ①~④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①~④ 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 ①과 ②는 하나의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만들어 제출(부피 최소화)
- ①, ②와 ③을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
 - * ①, ②, ④ 서류는 책자와 파일로 모두 제출
- 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작성 요령
 - 증빙자료(홍보책자, 상장, 인증서, 이수증 등)은 필요한 부분만 발취하여 수록
 -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 ③의 ‘동영상 파일’ 제작 요령
 - 동영상 파일은 usb에 넣어 제출. 20분 이내 분량으로 편집
 - 최근 1년 이내 작품 전체 제작 과정 및 전송시설(공방 등), 장비, 도구 등 포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전통기술 담당(윤지현 ☎ 042-481-4964~5)

○ 공고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4.(금)

○ 제출기간 : 2023. 3. 15(수) ~ 2023. 3. 24.(금) / (10일간)

* 3월 24일자 소인까지 유효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개인정보 등)는 외부에 비공개하며,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와 같이 총 3단계로 실시되며, **각 단계별 조사결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조사를 실시함.** 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정조사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2단계 및 3단계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 세부 일정을 추후 공지 예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3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코너의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4~5<전통기술 담당>)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1부.
2. 자료활용 동의서 1부.
3.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1부.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주택)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공방주소 포함)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를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전승 관련(공방 또는 전수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 제3호서식)

7. 해당 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본인은 무형문화재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해제 사유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한 보유자 인정 이후에라도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3. .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 칠장
보유자 조사대상자 _____(인)